

충청북도 총북학 진흥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8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 역사·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, 도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북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충북학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 (안 제4조)
-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충북학연구소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충북학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, 충북도민의 자긍심 및 애

향심 고취를 위해 충북학기본계획 및 진흥사업, 충북학연구소 및 충북학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제1호는 “지역문화”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·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, 문화예술, 생활문화,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하면서,
-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,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- “충북학”은 선사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·사회·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“충북학”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【참고】

-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9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시·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
제정일	-	17.08.09.	-	-	-	21.06.30.	-	19.01.30.
시·도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제정일	-	17.06.16.	21.08.17.	-	-	-	-	13.03.20

나. 조문별 검토

- ‘안 제1조’는 목적 규정으로, 본 조례가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, 충청도민의 자긍심·애향심 고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함.
- ‘안 제2조’는 정의 규정으로,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충북학”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.
- ‘안 제3조’는 충북학 연구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, 충북학 연구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‘안 제4조’는 ▲충북학 관련 정책, ▲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, ▲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등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“충북학기본계획”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- ‘안 제5조’는 ▲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, ▲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, ▲충북학 관련 포럼, 심포지엄 등의 사업, ▲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“충북학진흥사업”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‘안 제6조’는 충북학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“충북학연구소”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‘안 제7조’는 본 연구소의 운영·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‘안 제8조’는 ▲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, ▲충북학진흥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, ▲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, ▲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“충북학진흥위원회”를 둘 수

있도록 규정하면서, '안 제9조'는 위원회의 구성, '안 제10조'는 위원장의 직무, '안 제11조'는 위원회의 회의, '안 제12조'는 간사, '안 제13조'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, 충청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, 선사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·사회·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“충북학”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본 조례안의 충북학기본계획, 충북학진흥사업, 충북학연구소, 충북학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, 규정의 내용 또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“충북학”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학문으로 충북의 다양한 학문 주체들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, 연구 성과물의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.

붙임: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. 끝.